

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평생교육원의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반환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자와 사용자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10조)

1.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2. 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3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4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
5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붙임)

구미시평생교육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평생교육원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**천재지변**”을 “**천재지변이나**”로, “**사유로 평생교육원**”을 “**사유로**”로, “**경우**”를 “**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3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4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
5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70반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.	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1. 천재지변이나 ----- -- 사유로-----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2.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시장이 허가 취소한 경우	2. 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3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 전액 반환
<신설>	4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의 90 반환
<신 설>	5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: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 <개정 2012.3.21.>

② ~ ③ 생략

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생략

소과 실·과		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
입 안 자	과 장	박 수 원
	담 당	장 길 수
	담 당 자	김 태 수 (480-4324)